2026년 약품 구매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구입시방서는 일산·벽제수질복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구입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나. 업체는 본 계약, 납품과 관련되는 법령(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고시 등)과 본 구입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가.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 만료 시까지 차기 계약 상대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차기계약 상대자가 선정되어 신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4. 계약수량

가. 계약수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상 폴리머 : 22,110kg
- 액상 폴리머 : 23,800kg
- 음이온 폴리머 : 6,400kg
- PAC : 682,700kg
- 가성소다 25%_Tank Lorry : 42,600kg
- PAC 15-17%_Tank Lorry : 130,000kg
- 액상 폴리머 : 4,000kg
- 고상 폴리머 : 24,000kg
- 액상 폴리머 : 21,400kg
- PAC 10~12%_Tank Lorry : 56,110kg

단, 수질복원센터의 운영 사정에 따라 실제 주문량은 증감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을 “발주자”가 요구하는 매회 분할납품의 물량, 기한으로 분할하여 납품한다.

5. 계약 약품 사양

품 명	약 품 사 양	비 고
고상 폴리머	- 전하 밀도 : 약 30~40mol% - 밀도 : 약 0.65~0.85 g/㎤ - pH : 4~6 - 추천 용해 농도 : 0.1%~0.3%	일산
액상 폴리머	- 전하 밀도 : 약 50~60mol% - 밀도 : 약 1.03~1.07 g/㎤ - pH : 3.5~5.5 - 추천 용해 농도 : 0.2%~0.5%	일산
음이온 폴리머	- 전하 밀도 : 약 20~30mol% - 밀도 : 약 0.65~0.85 g/㎤ - pH : 6~8 - 추천 용해 농도 : 0.05%~0.2%	일산
PAC	- 산화알루미늄 함량 :15~17% - 비중 : 1.3~1.38 - pH : 2.0 ~ 3.5	일산
가성소다 25%	- 수산화나트륨 함량 : 24.5~25.5% - 비중 : 1.27~1.28 - pH : 13~14(강알칼리성)	일산
PAC 15~17%	- 산화알루미늄 함량 :15~17% - 황산이온 : 3% 이하 - 비중 : 1.3이상 - pH : 3.5 ~ 5.0	일산개량
액상 폴리머	- 전하 밀도 : 약 35~40mol% - 밀도 : 약 0.7~0.8 g/㎤ - pH : 3~10 - 추천 용해 농도 : 0.1%~0.3%	일산개량
고상 폴리머	- 전하 밀도 : 약 40~50mol% - 비중 : 약 1.02~1.06 - pH : 3.5~5.5	일산개량
액상 폴리머	- 전하 밀도 : 약 60~80mol% - 밀도 : 약 0.65~0.85 g/㎤ - pH : 3.5~5.5 - 추천 용해 농도 : 0.1%~0.3%	벽제
PAC 10~12%	- 산화알루미늄 함량 :10~12% - 황산이온 : 3.5% 이하 - 비중 : 1.18~1.25 - pH : 3.5 ~ 5.0	벽제

6. 납품장소 및 방법

가. 납품장소(현장도착도)

- 일산수질복원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12번길 64
- 벽제수질복원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통이로 1267번길 100-53

나. 납품 방법 및 검수·검사

- “계약상대자”는 사업소별 약품저장탱크 용량 및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요청한 납품 물량을 요청에 따라 5일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품 명	형 식	탱크용량	회당 최대 납품량	비 고
폴리머	15kg 포대	-	5Ton	원심탈수기
폴리머	1톤 IBC 탱크	10㎥	5㎥	원심탈수기
폴리머	15kg 포대	-	2Ton	3차처리(총인)
PAC	Tank Lorry	50㎥	25㎥	3차처리(총인)
가성소다 25%	Tank Lorry	40㎥, 15㎥	10㎥/2㎥	3차처리(총인)
PAC 15~17%	Tank Lorry	30㎥	10㎥	가압부상
폴리머	1톤 IBC 탱크	8㎥	요청 수량	농축기
폴리머	15kg 포대	-	요청 수량	가압부상
폴리머	1톤 IBC 탱크	8㎥	1㎥	탈수기
PAC 10~12%	Tank Lorry	24㎥	2㎥	총인처리

- “계약상대자”는 입고 시 물품도착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소 직원 감독 하에 사업소 내 계량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물량을 측정하단. 다만, 계량시설 고장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별도 공인분석 요구 시 “발주자”의 입회하에 시료채취, 분석의뢰 등의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다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납품 요청 후 수질변화 등으로 약품 사용량이 변동될 경우 납품 1회당 납품 기한과 납품 요구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물량 대금은 납품 회당 또는 별도 주기에 따라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계서류(계량 전표, 대금 청구서, 공인기관 또는 제조업체 시험성적서 등)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하고 발주자는 검토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산정기간 및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다.

7. 성능사양 및 보상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제시한 적합한 사양의 제품 공급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품의 모델명과 제조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합격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성분 규격에 불합격할 경우 지체 없이 납품한 전량을 반품하고 즉시 적합 규격의 제품으로 납품 절차에 따라 교화 납품하도록 해야 한다.

다. 만일 기 탱크 보유 약품과 불량 약품이 혼합되었을 경우 기존 약품도 전량 회수하고 그에 따른 피해 수량은 계약 수량 외 별도로 추가 납품하여 발주자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8. 안전사고(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물품의 납품 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나. 물품의 납품 및 입고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다.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납품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타인에게 재산, 인명 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납품 관련자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 안전보호구 착용 등 제반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필요한 설비 사용에 주의하며 사업소, 공익 등에 손실, 손해, 위해 등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변상, 보상, 복구 등 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바. 지연 납품 등으로 사업소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정지·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 손해, 변상, 보상 등 일체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해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결격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

나.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였을 때

다. 서로가 본 과업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라. 납품을 위한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불응하여 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마. “발주자”의 사정으로 처리방법 변경 등으로 사업이 불필요할 때

10. 기타

가. 기타 본 시방서나 본 계약 관련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내용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에 의하며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대는 “발주자”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등 이에 수반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행정 처분 등으로 납품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사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라. “발주자”는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